

중소기업 기술보호 고삐조인다!

중소기업청 정보보안 관제, 임차비용 지원 등 도입

-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- 중소기업청은 정보보안 관제센터의 설치, R&D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상담 강화 및 기술임치제도 이용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「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」을 확정하고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먼저,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대한 DDoS 공격 등 악성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이메일을 통한 중요 자료의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는 [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]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.
- 관제서비스는 민간에서도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고가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이용이 곤란하였다.
- 금년 중 [산업기술보호협회](Tel 02-3489-7080)에 문을 열게 될 [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]는 정부 R&D 참여 등으로 정보보안이 요구되지만 고가의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첨단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센터 구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되어 하반기부터 관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, 금년은 시범 사업기간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와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.
- 특히 금년부터 [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](교과부, 시행 2011. 1. 3)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R&D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자체 보안관리규칙을 제정 운영하는 등 자체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따라 각종 정부 R&D 사업 신청이 집중된 상반기에 이와 관련한 중소



기업의 문의와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예상하고 있다.

-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[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] (Tel 02-3787-0641)를 통해, 국가 R&D 참여 희망기업이 갖추어야 할 보안관리규칙이나 비밀유지협약서 샘플 등을 배포하고, 기업의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.
- 그리고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를 위한 유력한 대처방법으로 '08년부터 도입되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 임치 제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.
 - * 기술자료 임치제도 :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등록 보관함으로써 분쟁발생시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하고, 임치기업의 도산 또는 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
 - * '10. 12월말 현재 임치 실적(누적) : 453건, (임치 수수료 : 건당 30만원)
 - 기존의 400여개에 불과하던 [기술자료 임치센터] (Tel 02-368-8761)의 임치금고도 종장기적으로 3,000개 까지 확대하고, 온라인을 통한 임치도 3월부터 시행하여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배려할 예정이다.
 - 특히 금년부터 중소기업청 R&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, 특허출원 비용 뿐만 아니라 임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하였다.
-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기술보안 의식개선과 노력이 중요하며
 -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지경부·공정위·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☞ 문의 :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(042-481-4401)

